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비중 변경 등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96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비중 변경 등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6. 6. 22.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교직원 위원의 수가 학생 위원의 수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고, 교직원과 학생 위원의 수가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 위원의 선임 및 의견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게 되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측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곧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비중 변경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③ ----- ----- ----- ----- <u>전문가</u> 로----- -----, ----- ---- <u>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은</u> <u>같은 수로 구성하고</u> ----- -- <u>위원은</u> ----- ----- ----- <u>각각</u> 추천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u>협의하여야 한다.</u>	<u>같은 수의 위원으로 선임한다.</u>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각 학교에서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구성원의 균형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으로 제한되고,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며, 관련 전문가 위원 선임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대표 측과 학생 대표 측이 협의하여야 함.¹⁾

- 개정안은 ① 위원회 구성단위 중 ‘관련 전문가 등’을 ‘관련 전문가’로 변경하고, ②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같은 수로 하며,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도록

1)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먼저 ① 위원회 구성단위 중 ‘관련 전문가 등’을 ‘관련 전문가’로 변경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행법령은 ‘관련 전문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하 “대학등록금규칙”이라 함)」 중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에서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²⁾ ‘관련 전문가 등’에는 ‘(관련 전문가) 등록금심의회 관련한 전문가’와 ‘(등) 학부모, 동문’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관련 전문가 등’을 ‘관련 전문가’로 변경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각 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관련 전문가 등’을 ‘관련 전문가’로 변경할 경우, 학부모, 동문이 제외되고 전문가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원 구성에 따라 등록금 책정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 이외에 학부모, 동문 등 다양한 구성

2) 「대학등록금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원의 의견 수렴이 제한되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6년 1월 기준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 333개 학교 중 52.0%를 차지하는 173개 학교에서 관련 전문가 이외에도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②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로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행법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균형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으로 제한하는 한편,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은 2011년 법률 개정으로 포함되었고, 관련 전문가 위원 선임시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은 2020년 법률 개정으로 포함되는 등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생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 개정안은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를 추천하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연혁]

구분	법률 제9936호	법률 제11043호	법률 제17492호	개정안
연혁	2010.1.22. 개정, 2010.4.23. 시행	2011.9.15. 개정, 2011.11.1. 시행	2020.10.20. 개정, 2021.1.21. 시행	2026.6.22. 발의
구성 단위	•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 교직원, 학생, <u>관련 전문가 등</u>	• 교직원, 학생, <u>관련 전문가</u>
구성 비중	-	• <u>학생</u> 위원은 <u>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u>	•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 <u>학생</u> 위원과 <u>교직원</u> <u>위원</u> 은 <u>같은</u> 수로 구성
	-	-	• 구성단위별 위원은 <u>10분의 5 미만¹⁾</u>	
전문가 위원 추천	-	-	• <u>관련</u> 전문가 위원은 선임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학교</u> 측과 <u>학생 측이 협의</u>	• <u>관련</u> 전문가 위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학교</u> 측과 <u>학생 측</u> 이 각각 <u>같은 수</u> 추천

주: 1) 2010년 개정된 「대학등록금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에는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해당 내용은 2020년 개정된 법률에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으로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사하게 규정됨.

□ 개정안과 같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여, 단일 구성단위에 치우치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단위를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세 단위로 구분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등록금 책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학부모, 동문을 제외하면서,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고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전문가 위원을 추천하여, 실질적으로 교직원과 학생이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교직원과 학생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는 사안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³⁾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6년 1월 기준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전문가 등 위원을 제외하고, 교직원 위원 수와 학생 위원 수가 동일한 학교가 52.3%(174개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직원 위원 수가 많은 학교가 42.0%(140개교)이고, 학생 위원 수가 많은 학교가 5.7%(19개교)로 가장 적게 나타남.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개교, %)

구분	교직원 위원 수 = 학생 위원 수	교직원 위원 수 > 학생 위원 수	교직원 위원 수 < 학생 위원 수	합계
학교 수	174	140	19	333
비중	52.3	42.0	5.7	100.0

주: 2026. 1. 기준

자료: 교육부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건국대 등 23개 기관은 ‘전문가 등’을 ‘전문가’로 제한함에 따라 학부모, 동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학생·교직원 위원을 의무적으로 동수로 구성할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라는 대립 구도를 만들 우려가 크고, 학생과 학교 측 의견 대립 시, 가부 동수로 인한 안전 의결 교착 등 원활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전문가 위원을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각각 추천·선임하는 것은 전문가 위원의 객관성·중립

3) 「대학등록금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각각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